

제265회 임시회
광진구의회

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익안 심사보고서



2023. 10. 24.

기획행정위원회

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15
----------	------

2023. 10. 24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23. 10. 10.
- 나. 회부일자 : 2023. 10. 19.
- 다. 상정일자 : 2023. 10. 23.

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광진구청장

나. 제출사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
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- 출연근거 :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 제20조제4항
- 출 연 금 : 출연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, 2024년도 예산(안) 심의
결과에 따라 확정

(단위 : 억원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(안)
구 출연금	10.5	26	30	10	1
은행 출연금	10	11	13	19	19
(협력은행)	(국민)	(국민, 우리, 신한, 하나)			
용자규모(보증배수)	321(15배)	574(12배)	467(12배)	525(15배)	475(12.5배)

- 출연방법 :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금 지급
- 필 요 성
 -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 금융지원책인 **광진형 특별용자 지원 (영세업체당 7천만원 이내, 2년간 2% 이차보전, 보증심사기준 완화 등)** 추진을 위함
 - ‘광진형 특별용자 지원’ 시행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 - 자금난 해소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, 「지역 신용보증재단법」 제7조(기본재산), 「서울특별시 서울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기본 재산의 조성)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」 제20조(중소기업육성기금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이경수)

- 의안번호 제2115호 「2024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」은 2023년

10월 10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23년 10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광진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,
- 이번 출연을 통해 고금리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담보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축소, 폐업, 신용악화 등을 방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적정성과 유용성 증대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5. 토론

- 회의록 참조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